

부산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가단3375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② 피고는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제1양수금

(가) E(주)는 2014. 3. 6. C에게 1,000만원을 이자율 및 지연이자율 각 연 36.5%의 조건으로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1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F(주)를 거쳐 2018. 10. 26. 이 사건 1대여금 채권을 최종 양수한 후, C을 상대로 ‘양수금 24,464,480원 및 그 중 999만원에 대한 2019.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30105)을 신청하여 2019. 3. 26. 위 법원으로부터 그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4.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제2양수금

(가) (주)G은 2013. 7. 31. C에게 500만원을 이자율 연 34.9%의 조건으로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2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3. 22. 이 사건 2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후, C을 상대로 ‘양수금 3,638,415원 및 그 중 2,677,624원에 대한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22676)을 신청하여 2016. 6. 14. 위 법원으로부터 그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7.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상속

(1) H가 2021. 9. 8.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인 C은 2021. 11. 23. H에 대한 상속포기(부산가정법원 2021느단2442)를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1. 29.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2) 피고를 포함한 H의 나머지 상속인들은 2022. 2.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 등 C의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① 원고는 C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참여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C은 이미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공동상속인이 아니었던 점, ② 한편 D의 위 상속포기 신고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고가 스스로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취지에서 소를 취하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소취하에 부동의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 지연 등을 초래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정한다(피고는 소취하에 부동의한 이유로 소송비용 지출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정의 신청으로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일 뿐이었다)].

판사 김도균

별지

부동산 목록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 53㎡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단독주택

1층 내지 2층 각 37.95㎡, 3층 19.41㎡ 끝.

